

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년 3월 3일 한윤석, 주수종,
류재구 의원 등 12명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3월 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(2010. 3. 15)
상정 및 의결

2. 제안설명

(제안 설명자 :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의원)

□ 제안이유

- 여객을 수송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,
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에게
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하여 복지시설을 설치하고,
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 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을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
택시운수종사자로 하고, 택시운수종사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
범위내에서 일반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2조, 제5조)

- 나. 복지시설은 휴게실, 매점, 택시 유실물 센터, 질 좋고 저렴한 식당,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위한 정비사업, 경기도 및 부천시 행정 위탁을 위한 조합사무실,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서비스 향상과 관련된 사업만을 하도록 함. (안 제4조)
- 다. 복지시설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천시조합(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)에게 위탁하도록 하고, 수탁자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고 그 규정에 따라 복지시설을 운영하도록 함. (안 제6조)
- 라.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,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식당, 매점, 정비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, 그 수익금은 복지시설 사업 개선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. (안 제7조, 제8조)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문	답 변
○ 복지시설 신축시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실무부서의 의견에 대해서는?	○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각종 행사가 개최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평시에도 일반시민도 주차장 이용이 어려운 관계로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.
○ 복지시설 신축시 임원진 및 일부 기득권층만 이용하고 점유하는 등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될 우려에 대한 대책은?	○ 복지시설 신축시 이용범위를 정확히 하고 특정 모임이나 단체만 활용하지 못하도록 내부 운영규정을 만들어 운영토록 하겠음.

질 문	답 변
○ 복지시설 설치에 대해 택시운수 종사자가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?	○ 매월 발행되는 회보를 통해 택시운수종사자(3,400여명)중 약 80%가 진행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.
○ 복지시설에 정비사업까지 운영한다면 쉽터로써 순수한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?	○ 정비사업은 오일교환, 타이어정비 등 단순한 경정비만 운영할 계획이나 향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재검토 하겠음.
○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이용자중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와의 갈등관계 등 괴리감이 발생할 소지에 대해서는?	○ 개인택시종사자는 대부분 법인택시종사후 개인택시를 운영함으로 같은 동료로 인식하고 있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제570호
의결 년월일	2010. 3. 19 (제159회)

제안년월일 : 2010. 3. 15.

제안자 : 건설교통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6조제1항에서 복지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자로 “경기도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부천시조합(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)”으로 정하고 있으나, 안 제8조에서는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, 양 조문간 내용이 상충됨.

2. 주요골자

-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제4호의 조문 일부 삭제
-
-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례 제6조제1항의 조문 일부 삭제 및 제4항의 조문 수정
-
-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조의 조문 일부 삽입
-

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
조제4호의

“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위한 정비복지사업 운영”을

“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위한 정비사업 운영”으로 수정

-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
조제1항의

“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기능 수행 및 시설물, 물품 관리 등 복지시설
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천시조합
(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)에게 위탁할 수 있다.”를

“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기능 수행 및 시설물, 물품 관리 등 복지시설
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천시조합
에게 위탁할 수 있다.”로 수정

-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
조제4항의

“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인력, 수익사업 등 복지시설의 책임은
수탁자로 한다.”를

“복지시설에 필요한 인력 수급, 수익사업 운영 등 복지시설의 관리·
운영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.”로 수정

○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조의

“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, 그 수익금은 복지시설 개선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”를

“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, 그 수익금은 복지시설 운영과 개선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”로 수정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설치 및 기능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위한 <u>정비 복지사업</u> 운영</p> <p>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</p> <p>①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기능 수행 및 시설물, 물품 관리 등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천시조합(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)에게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~③ (생략)</p> <p>④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인력, 수익사업 등 복지시설의 책임은 수탁자로 한다.</p> <p>제8조(수익사업)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4조의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, 그 수익금은 <u>복지시설 개선사업</u>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</p>	<p>제4조(설치 및 기능)</p> <p>1. ~ 3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정비 사업</u> ---</p> <p>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</p> <p>①----- ----- ----- -----<u>부천시조합</u> -----<u>에게</u>-----.</p> <p>②~③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④복지시설에 필요한 인력 수급, 수익사업 운영 등 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.</p> <p>제8조(수익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<u>복지시설 운영과 개선 사업</u> -----</p>

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근로자복지기본법」 제43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택시운수종사자”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(이하 “복지시설”이라 한다)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설치 및 기능) 부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이 조례에 따라 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택시운수종사자의 휴게실 및 매점 등의 운영
2. 택시 유실물 센터 운영
3.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질 좋고 저렴한 식당 운영
4.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위한 정비사업 운영
5. 경기도·부천시 행정 위탁업무를 위한 개인택시조합 사무실 운영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이용대상)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. 다만, 택시운수종사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시민도

이용할 수 있다.

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기능 수행 및 시설물, 물품 관리 등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천시조합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,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전 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④ 복지시설에 필요한 인력 수급, 수익사업 운영 등 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.

제7조(운영비) 제6조에 따른 복지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.

제8조(수익사업)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, 그 수익금은 복지시설 운영과 개선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근로자복지기본법」 제43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택시운수종사자”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(이하 “복지시설”이라 한다)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설치 및 기능) 부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이 조례에 따라 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택시운수종사자의 휴게실 및 매점 등의 운영
2. 택시 유실물 센터 운영
3.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질 좋고 저렴한 식당 운영
4.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위한 정비사업 운영
5. 경기도·부천시 행정 위탁업무를 위한 개인택시조합 사무실 운영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이용대상)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. 다만, 택시운수종사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다.

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기능 수행 및 시설물, 물품 관리 등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천시조합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,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④ 복지시설에 필요한 인력 수급, 수익사업 운영 등 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.

제7조(운영비) 제6조에 따른 복지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.

제8조(수익사업)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, 그 수익금은 복지시설 운영과 개선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